

2001. 1. 15 제정

2026. 3. 18 개정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들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이사 2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에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임 및 충원)

1.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의 해임·사임·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결원된 위원을 충원한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7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구두 기타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각 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결의방법)

1. 위원회 결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의사록)

1.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

위원회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3조 (기타)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